

사회

구청 상대 5년째 소송 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인 50대가 허가관청인 광주시 광산구청을 상대로 5년째 지리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한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교사인 박민수(57)씨와 광산구청과의 악연은 지난 200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력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광산구청에 설립 신고를 신청했지만 광산구청이 신고 서류 접수를 수차례 반려했

기 때문이다.

당시 자치구들은 예산 지원 부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신규 허가를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씨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광산구청은 4개월 만에 설립 신고증을 발급했다.

이후 박씨는 북구청에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센터 간 800m 거리 제한을 두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 이를 근거로 설립신고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 결국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그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규제 지침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인터넷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아동복지의 문제점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제기하며 행정관청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그는 “이 때 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9년 광산

구 관내 45개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2010년 운영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 지난해 5월 운영보조금 중단무효 확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씨는 지난 2월 '손해배상전자소송'
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당한 민원사무 처리를 자치단체가 답변을 회피하거

나 자연할 경우 하루 1만원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자치 법규를 알게 돼 광산구청에 1200여만원 상당의 지체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은 “관련 민원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했는데 해당 홈페이지는 보상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의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50대, 아동센터설립 관련 등
부당 행정행위 맞서 잇단 문제 제기



행복한 그 시절들...

20·2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공연을 관람한 3500명의 관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옛 추억 떠올린 광주 '세시봉'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 공연...연이틀 3500여 관객 열광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이 떠오른 시간이었다. 함께 노래하고 같이 부대끼던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있었고, 그 때 친구들과 객석에 앉아 노래를 목청껏 따라부르는 이들도 많았다.

광주일보사 창사 60주년 기념 공연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무대
는 국내 정상급 가수와 관객들이 하

나된 행복한 무대였다. 지난 20·2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운 3500여명의 관객들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김세환이 부르는 ‘길가에 앉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청아한 고음의 정훈희가 들려주는 ‘꽃밭에서’, ‘무인도’, 설명이 필요없는 송창식이 부르는 ‘한번쯤’, ‘담배가 게 아가씨’ 등 수많은 히트곡들은 관

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안개’와 ‘축제의 노래’ 등은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세 사람이 앙코르 곡으로 ‘그대 그리고 나’와 ‘그건 너’를 부를 땐 관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콘서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법원, 고현준호씨 친일행위 인정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H그룹 회장의 조부이자 일제시대 호남지역 부호인 고 현준호 씨에 대한 치일행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현씨의 유족이 현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친일행위의 일부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일제 사상전향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역 대화
속을 설립해 사상보국운동사업까지
벌인 구성원에 비해 현세의 활동은 우위
비중이 극히 미미한 학대하는 등 단판에
적극 앞장선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1930년~1945년
선충총독부의 광주보호관찰심사를
위임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들을 대
상으로 사상장학자업 임무를 맡았다.
또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적극 선전하
는 단체의 간부로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광주지역 대화속을 설립하
기도 했다. /연필뉴스

/연합뉴스

[illegible]